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수준 및 근로여건 실태조사(안)(종사자용)

관리 사항 (작성하지 마십시오)									
조사시설 코드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height: 20px;"> <tr> <td style="width: 12.5%;"></td> </tr> </table>								
조사표 번호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height: 20px;"> <tr> <td style="width: 16.6%;"></td> </tr> </table>								
조사자 코드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height: 20px;"> <tr> <td style="width: 12.5%;"></td> </tr> </table>								
설문지 파일 다운로드 주소	(추후제공)								
문의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044-287-8273 jsun@kihasa.re.kr (조사수행기간)								

안녕하십니까?

본 조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 3년마다 실시하는 조사로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수준에 관한 기초자료를 수집하여 향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정책을 수립하는 데 근거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국가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는 본 조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바쁘시더라도 질문에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답 내용은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 자료로만 활용되고, 개인의 정보는 절대 비밀이 보장됩니다.

응답하신 설문지는 방문 조사원, 전자메일 및 우편 중에서 가장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전달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조사대상 시설 일반사항

시설명	시설 주소

* 조사대상 시설에 근무하는 모든 종사자께서는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근로환경과 보수지급

【1-1. 근로실태】

1. 귀하께서는 현재 근무하시는 시설에서 얼마동안 재직하고 계십니까?

_____년 _____개월

2. 귀하의 사회복지 총 종사 경력은 어떻게 됩니까?

_____년 _____개월

※ 14페이지 <직종에 따른 경력환산>을 참고하여 작성하여 주십시오.

3. 귀하의 고용형태는 무엇입니까?

- 1) 정규직 2) 비정규직-무기계약직 3) 비정규직-기간제 계약직
 4) 비정규직-파트타임 5) 비정규직-기타

4. 귀하의 실질적인 주당 평균 근로 일수는 며칠입니까? (2019년 기준)

주당 평균 _____ 일

5. 귀하의 1일 근무 중 휴게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점심시간 포함)(2019년 기준)

1일 평균 _____ 시간 _____ 분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 대기시간(작업은 하지 않지만 조속한 시간 내에 근무에 임할 것을 근로자가 예상하고 있거나 사용자로부터 언제 근로의 요구가 있을지 불분명한 상태에서 기다리는 시간)과 구분됨

6. 귀하는 실질적으로 주당 평균 몇 시간을 근로하십니까? (휴게시간, 수면시간 제외)(2019년 기준)

주당 평균 _____ 시간 _____ 분

7. 귀하는 초과근무를 주당 몇 회 정도 하십니까? (2019년 기준)

주당 _____ 회

8. 귀하의 사용가능한 연간 총 휴가 일수 및 실제 사용한 휴가 일수는 각각 며칠입니까? (2019년 기준)

휴가 일수	사용한 휴가 일수
총 _____ 일	총 _____ 일

야간당직이란 정상근무 시간이 종료된 후로부터 다음 날 정상근무 시간이 개시될 때까지(오후 6시~익일 오전 9시) 업무처리, 건물 및 부대시설 관리와 안전 등을 위하여 근무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 교대근무 제외).

9. 귀하께서는 귀 시설이 화재, 도난, 사고(알코올 등으로 인한 폭력, 방화 등) 및 자연재해로부터 어느 정도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전혀 안전하지 않다 2) 안전하지 않다 3) 보통이다
 4) 안전하다 5) 매우 안전하다

10. 귀하께서는 귀 시설이 화재, 도난 및 자연재해로 인한 시설파손 및 종사자 부상 등의 응급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야간당직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필요하다 2) 필요하다 3) 보통이다
 4) 필요하지 않다 5) 전혀 필요하지 않다

11. 귀하께서는 야간 당직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현재로부터 지난 1년간)

- 1) 예 (→ 문11-1로 갈 것) 2) 아니오 (→ 문12로 갈 것)

11-1. (야간당직 경험을 한 경우) 현재 야간당직을 담당하면서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한 가지만 표시해주십시오.

- 1) 야간당직으로 피로가 누적됨
 2) 개인시간이 부족함
 3) 야간수당을 지급받지 못함
 4) 기타 (적을 것: _____)

대체인력이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휴가(연차 유급휴가, 병가, 경조사 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교육 및 훈련 등)에 따른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되는 인력을 말합니다. 단, 대체인력이 지원되는 종사자 휴가에는 고용보험에서 급여가 지급되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제외됩니다.

12. 귀하께서 연차 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 가지만 표시해 주십시오.

- 1) 연차 유급휴가 100% 사용
 2) 시설 이용자들에게 대한 서비스 공백에 대한 우려
 3) 동료직원의 업무부담 가중
 4) 연차 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 없는 시설의 상황
 5)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 급여를 받기 위해 자발적으로 미사용
 6) 단기간의 대체인력을 구하기 어려워, 어쩔 수 없이
 7) 기타 (적을 것: _____)

13. 귀 시설에 대체인력 파견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1) 전혀 불필요 (→ 문14로 갈 것) 2) 불필요 (→ 문14로 갈 것)
 3) 보통 (→ 문14로 갈 것) 4) 필요 (→ 문13-1로 갈 것)
 5) 매우 필요 (→ 문13-1로 갈 것)

13-1. (필요한 경우) 귀하에게 대체인력이 가장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 가지만 표시해주시오.

- 1) 연차 유급휴가 사용을 위해 2)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을 위해 3) 병가 사용을 위해
 4) 경조사 휴가 사용을 위해 5) 교육 및 훈련을 위해 6) 기타(적을 것: _____)

【 1-2. 보수실태】

14. 귀하께서는 보수를 어떠한 형태로 지급받습니까?

- 1) 월급 2) 일급
 3) 시급 4) 기타 (적을 것: _____)

15. 귀하의 월 평균 보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2019년 기준, 세전 급여이며 각종 수당을 포함한 금액)

총 액 _____ 만 원,

기본급 월 _____ 만 원, 기본급 외 수당 월 _____ 만 원

16. 귀하께서는 자신의 직위나 직무를 고려할 때 적절한 보수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전 급여이며, 각종 수당을 포함한 금액)

월 평균 _____ 만 원

17. 현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체계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로 3가지만 작성해 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3순위 ()

- 1) 보수수준 자체가 낮음
 2) 직렬간 급여 차이가 부적절함
 3) 직급간 급여 차이가 부적절함
 4) 직급 내 호봉 간 급여차이가 부적절함
 5)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보수 격차가 부적절함
 6)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의무사항이 아니라 권고사항임
 7) 기타 (적을 것: _____)

II. 종사자 처우수준 및 욕구

【II-1. 보수처우 욕구】

18. 다음 각 문항에 귀하의 의견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의 직무나 업무강도에 비해 보수수준은 적당하다.	①	②	③	④	⑤
2)	나의 보수수준은 다른 유사직군 종사자(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들과 비교하여 적당하다.	①	②	③	④	⑤

19.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를 공무원 수준에 맞춘다고 할 때, 귀하는 다음 직위별 비교대상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경력과 시설 규모 기준: 관장/원장급 5~7급, 국장/부장급 6~7급, 과장급 7급,
대리/선임생활지도원급 8급, 사회복지사/생활지도원급 9급

- 1) 매우 동의함 (→ 문20으로 갈 것) 2) 대체로 동의함 (→ 문20으로 갈 것)
 3) 보통임 (→ 문20으로 갈 것) 4) 대체로 동의하지 않음 (→ 문19-1로 갈 것)
 5) 절대 동의하지 않음 (→ 문19-1로 갈 것)

<참조>

공무원 비교직급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직급-직위			비교직급 설정 기준	
	직급	이용시설	생활시설	종사자 규모	경력
5급	1급	관장, 원장	원장	10인 이상	15년 이상
				10인 미만	25년 이상
6급	2급	관장, 원장	원장	10인 이상	15년 미만
		부장	사무국장	10인 미만	15~25년
7급	3급	관장, 원장	원장	-	13년 이상
		부장	사무국장	-	13년 미만
		과장	과장	-	-
8급	4급	대리	선임생활지도원	-	-
9급	5급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직업재활사, 임상심리사, 생활복지사, 직업훈련교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상담지도원, 생활시설 생활지도원	생활지도원	-	-
9급(96%)	6급	간호조무사, 조리사, 안전관리인, 사무원, 운전기사, 생활시설 관리인	기능직	-	-
9급(93%)	7급	생활보조원, 취사원, 관리인, 환경미화원, 생활시설 기능직	관리인	-	-

주) 본 기준은 2020년 서울시 기준입니다.

※ 9급(96%)는 9급 공무원 보수기준의 96%, 9급(93%)는 9급 공무원 보수기준의 93%를 의미함

19-1. (동의하지 않는 경우) 만약 공무원 비교직급 기준에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것에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 1) 공무원에 비해 종사자의 경력기준이 낮다
- 2) 공무원에 비해 종사자의 경력기준이 높다
- 3) 시설의 종사자 규모에 따른 기준(10인)이 비합리적이다
- 4) 시설의 종사자 규모 기준에 따라 차이를 두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 5) 기타 (적을 것: _____)

20.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어떤 것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로 3가지만 작성해 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3순위 ()

- 1)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인건비 가이드라인 수준 상향 및 준수 의무화
- 2) 사회복지시설 단일 급여체계 구축을 통해 시설 간 종사자 보수수준 격차 최소화
- 3)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정부(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급방식을 포괄보조금방식에서 분리 지급 방식(사업운영비와 인건비 분리)으로 변경
- 4) 적은 기본급과 다수의 수당체제로 이루어진 임금체계 개선
- 5) 보조금 지급 주체를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로 전환
- 6) 사회복지시설 운영 법인의 종사자 인건비에 대한 추가지원 의무화
- 7) 종사자 인건비와 관련하여 현장 종사자와 협의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 8) 사회복지 분야별로 상이한 경력인정 지침의 통일성 확보
- 9) 시설별 최소 승진연한 기준 마련 및 직급별 자격기준 강화
- 10) 각종 필요 수당의 신설
- 11) 법정수당의 보조금 집행 인정(연월차 수당, 시간외 수당 등)
- 12) 기타 (적을 것: _____)

【II-2. 근무환경 욕구】

21. 다음은 귀하의 직업에 대한 항목별 만족도를 알아보기 위한 문항입니다. 해당되는 것에 표시해 주십시오.

문항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1) 일 (담당업무)	①	②	③	④	⑤
2) 보수 (수당 및 보너스 포함)	①	②	③	④	⑤
3) 상급자와의 관계	①	②	③	④	⑤
4) 동료와의 관계	①	②	③	④	⑤
5) 하급자와의 관계	①	②	③	④	⑤
6) 시설장 및 중간관리자와의 의사소통	①	②	③	④	⑤
7) 종사자 간 의사소통	①	②	③	④	⑤
8) 승진 기회	①	②	③	④	⑤

25. 귀하께서는 귀 시설에 근무하시면서 위협이나 위험을 어느 정도 경험하고 계십니까?

- 1)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편이다 (→ 문26으로 갈 것)
- 2) 경험하지 못하는 편이다 (→ 문26으로 갈 것)
- 3) 보통이다 (→ 문26으로 갈 것) 4) 경험하는 편이다 (→ 문25-1로 갈 것)
- 5) 자주 경험하는 편이다 (→ 문25-1로 갈 것)

25-1. (경험하는 경우) 귀하께서는 귀 시설에 근무하시면서 어떠한 위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해당 되는 것에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 1) 동료들로 부터의 부당한 대우
- 2) 이용자로 부터의 부당한 대우
- 3) 직업적 특성에 따른 신체적 질환
- 4) 기타 (적을 것: _____)

위험요인이란 ① 동료들로 부터의 부당한 대우(폭력, 무리한 업무요청, 반말, 의견묵살, 욕설 등 인격모독 행위 포함), ② 이용자로 부터의 부당한 대우(폭력, 무리한 업무요청, 반말, 의견묵살, 욕설 등 인격모독 행위 포함), ③ 직업적 특성에 따른 신체적 질환 등을 의미합니다.

26. 귀하께서는 현재 직장에서 이직 의사가 있습니까?

- 1) 그렇다 (→ 문26-1로 갈 것) 2) 아니다 (→ 문27로 갈 것)

26-1. 현재 이직의사가 있다면 그 사유를 우선순위로 3가지만 작성해 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3순위 ()

- 1) 업무가 적성에 맞지 않아서 2) 업무량이 많아서
- 3) 근로시간이 길어서 4) 직원 간의 관계가 나빠서
- 5) 보수가 낮아서 6) 조직상하 간 의사소통이 잘 안돼서
- 7) 인권을 보장 받지 못해서 8) 동료 및 이용자로 부터 위협을 느껴서
- 9) 결혼·학업·출산·질병 등 개인 사유로
- 10) 기타 (적을 것: _____)

27. 입사부터 지금까지 귀하가 실제로 사용한 법정휴가제도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사용 하셨습니까? 해당되는 것을 모두 작성해 주십시오.

- 1) 연월차 휴가 (년 _____ 일) 2) 보건휴가 (년 _____ 일)
- 3) 출산전후휴가 (_____ 개월) 4) 유산사산휴가 (_____ 일)
- 5) 임신기간 단축근로제도 6) 모두 사용안함

28. 만약 귀하가 법정휴가제도 사용을 희망하였으나 보장받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며 이유는 무엇입니까?

28-1. 보장받지 못한 법정휴가제도(27번 응답문항에서 선택): _____

28-2. 법정휴가제도를 보장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것에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 1) 과도한 업무량/업무공백
- 2) 기관·상사·동료 간에 눈치가 보여서
- 3) 급여삭감·실적 하향 등 불이익
- 4) 법정 휴가제도에 대해 모름
- 5) 개인연차 및 공휴일로 대체사용
- 6) 1년 미만 근무·개인 및 5인 이하 사업장
- 7) 기관에서 휴가사용 거부·축소시행
- 8) 기타 (적을 것: _____)

29. 귀하께서 종사자를 위해 시행 및 반드시 적용되었으면 하는 휴가 및 복리후생제도는 무엇입니까? 우선순위로 3가지만 작성해 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3순위 ()

- 1) 자녀 학자금
- 2) 본인 학자금
- 3) 근로자 대출
- 4) 경조사비
- 5) 체력단련비
- 6) 교육훈련비
- 7) 휴양시설
- 8) 직원휴게시설
- 9) 동호회 지원
- 10) 연월차 휴가
- 11) 유급보건휴가
- 12) 산전후휴가
- 13) 유산사산휴가
- 14) 육아휴직
- 15) 안식휴가제
- 16) 진료휴가(본인 및 가족)
- 17) 임신기간 단축근로제도
- 18) 직원포상제도
- 19) 기타 (적을 것: _____)

특례업종이란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에 의거하여 노사서면합의만 이뤄지면 연장근무 시간(주 12시간)과 휴식시간(4시간 이상 노동 시 30분, 8시간 이상 노동 시 1시간)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업종을 의미합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에는 '사회복지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0. 금번 정부에서는 법정 근로시간 준수 및 근로시간 단축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제도 개정을 논의 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근로기준법 특례업종에서 '사회복지사업'이 제외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1) 동의한다 (→ 문31로 갈 것)
- 2) 동의하지 않는다 (→ 문30-1로 갈 것)

30-1.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것에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 1) 현실적으로 연장근로가 계속 발생하기 때문
- 2) 서비스의 질이 하락될 가능성 발생
- 3) 연장근로시간의 감소로 개개인의 수당이 줄어듦
- 4) 이용자 불만이 심함
- 5) 기타 (적을 것: _____)

31. 특례업종에서 제외가 될 경우, 어떤 것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순위로 3가지만 작성해 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3순위 ()

- 1)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단일임금체계 수립
- 2) 사회복지시설의 인력배치기준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및 지원
- 3) 표준근로형태(4조 3교대제)로 근로형태 표준안 마련 및 지원
- 4) 포괄보조금(인건비, 사업비, 경비를 통합하여 총액지원)으로 지원하여 인력활용의 자율성 부여
- 5) 전문사회복지사제도 도입 및 서비스 품질관리 방안 마련
- 6) 사회복지생활시설의 3교대 근무를 위한 인력 지원
- 7) 소규모시설(그룹홈, 주간·단기 시설 등)에 대한 추가 인력 배치
- 8) 기타 (적을 것: _____)

3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의견(문제점, 애로사항, 개선사항 등)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기술해 주십시오.

Ⅲ. 시간선택제 및 교대제 근무

시간선택제란 근로자가 ① 일가정 양립, ② 점진적 퇴직 및 재취업, ③ 일·학습 병행 등을 위하여 사업주와 협의하여 근로시간,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간, 근무요일 등을 선택할 수 있는 일자리입니다. 시간선택제는 주 5일 근로를 하면서 1일 근로시간이 통상근로시간인 8시간보다 적게 근무하는 방식, 주 5일 중 4일 이하로 근무하는 방식, 주5일 중 일부는 전일근무, 다른 날은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하는 방식으로 활용가능합니다.

33. 귀하께서는 현재 근무하시는 시설에 시간선택제 일자리제도가 도입되길 원하십니까?

- 1) 예 2) 아니요

34. 만약 귀 시설에서 시간제 일자리를 도입한다면,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전환(이직)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1) 예 (→ 문34-1로 갈 것) 2) 아니요 (→ 문34-3으로 갈 것)

34-1. (의향이 있는 경우) 전환(이직)할 의향이 있으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 가지만 표시 해주십시오.

- 1) 육아와 병행하기 위해서
 2) 학업과 병행하기 위해서
 3) 점진적 퇴직준비 및 퇴직 후 재취업 준비를 위해서
 4) 건강상의 이유로
 5)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6) 기타 (적을 것: _____)

34-2. (의향이 있는 경우) 어떠한 시간선택제를 선호하십니까? 한 가지만 표시 해주십시오.

- 1) 주 5일 근로를 하면서 1일 근로시간이 통상근로시간인 8시간보다 적게 근무하는 방식
 2) 주 5일 중 4일 이하로 근무하는 방식
 3) 주 5일 중 일부는 전일근무, 다른 날은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식
 4) 주당 최저 근무 일수를 충족시키는 정도의 근무 방식
 5) 기타 (적을 것: _____)

34-3. (의향이 없는 경우) 만약 전환(이직)할 의향이 없으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 가지만 표시 해주십시오.

- 1) 근로시간을 단축할 필요가 없어서
 2) 현재 임금수준 유지하기 위해서
 3) 고용 불안정을 우려해서
 4) 승진 등 인사고과에 불리할 것 같아서
 5) 복지혜택 등에 대해 손해를 볼 것 같아서
 6) 기타 (적을 것: _____)

다음은 교대제 근무에 관한 문항입니다. 생활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생활지도원)만 응답하시고, 이용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는 IV. 일반사항으로 가시오.

35. 귀 시설은 교대근무제를 실시합니까?

- 1) 예 (→ 문35-1로 갈 것)
- 2) 아니오 (→ 문36으로 갈 것)

35-1. 귀 시설의 교대제 근무형태는 다음 중 어떠한 형태입니까?

- 1) 2조 격일제(24시간 근무하고 다음날 24시간 휴무)
- 2) 2조 2교대(2개의 근무조가 1일을 전후반기로 나누어 근무)
- 3) 3조 2교대(3개의 근무조가 1일을 전후반기로 나누어 근무하고 1조는 휴무)
- 4) 3조 3교대(3개의 근무조가 1일을 3조로 나누어 근무)
- 5) 4조 3교대(4개의 근무조가 1일을 3조로 나누어 근무하고 1조는 휴무)
- 6) 기타 (구체적으로 적을 것: _____)

35-2. 귀하는 주 1회 유급휴일을 부여받고 있습니까?

- 1) 예
- 2) 때때로 부여
- 3) 아니오

35-3. 귀하는 교대제 근무형태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가지만 표시해주십시오.

- 1) 시설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 휴게, 야간 및 휴일근로 등을 준수하기 어려움
- 2) 정부의 연장근로수당 보조금 지원의 수준이 낮음
- 3) 생활지도원 1인이 담당하는 이용자 수의 과다
- 4) 양질의 인력 채용의 어려움
- 5) 기타 (적을 것: _____)

36. 귀하께서는 귀 시설에 4조 3교대제(4개의 근무조가 1일을 3조로 나누어 근무하고 1조는 휴무) 근무형태 도입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전혀 불필요 (→ 문36-2로 갈 것)
- 2) 불필요 (→문36-2로 갈 것)
- 3) 보통 (→ 문37로 갈 것)
- 4) 필요 (→ 문36-1로 갈 것)
- 5) 매우 필요 (→ 문36-1로 갈 것)
- 0) 도입함 (→ 문37로 갈 것)

36-1. (필요한 경우) 귀 시설에 4조 3교대제 근무형태가 도입될 경우 우려되는 점은 무엇입니까?

36-2. (불필요한 경우) 귀 시설에 3교대제 근무형태 도입이 불필요하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IV. 일반사항

37.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만 _____ 세 (출생년월 _____ 년 _____ 월)

38.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1) 여자 2) 남자

39. 귀하의 결혼상태는 어떻게 되시나요?

1) 기혼 2) 미혼

40. 귀하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 1) 고졸 미만 (→ 문41로 갈 것)
- 2) 고등학교 졸업 (→ 문41로 갈 것)
- 3) 전문대졸 및 대학중퇴 (→ 문40-1로 갈 것)
- 4) 4년제 대학졸업 (→ 문40-1로 갈 것)
- 5) 대학원졸업 이상 (→ 문40-1로 갈 것)

40-1. (최종학력이 전문대졸 이상인 경우) 귀하의 전공은 무엇입니까? (여러 전공자의 경우 최종전공 학력 기입)

- 1) 사회복지 2) 아동·청소년 3) 특수교육 4) 직업재활
- 5) 물리치료 6) 언어재활 7) 교육학 8) 심리학
- 9) 가정학 10) 식품영양 11) 간호학 12) 회계학
- 13) 전산학 14) 기타 (적을 것: _____)

41. 귀하가 직무와 관련하여 소지하고 있는 자격증은 무엇입니까? 해당되는 것에 모두 표시해 주십시오.

- 0) 자격증 없음
- 1) 사회복지사 1급 2) 사회복지사 2~3급 3) 정신보건사회복지사 1~2급
- 4) 의료사회복지사 5) 학교사회복지사 6) 특수교사
- 7) 청소년지도사 8) 직업재활사 9) 간호사
- 10) 간호조무사 11) 물리치료사 12) 영양보호사 1~2급
- 13) 정신보건간호사 14)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5) 의사
- 16) 영양사 17) 치료사(심리, 언어, 작업 등) 18) 보육교사
- 19) 상담원(가정폭력, 성폭력) 20) 통번역사 21) 언어재활사
- 22) 시설관리관련자격(방화관리자, 조리사, 전기, 운전기사 등)
- 23) 기타 (적을 것: _____)

42. 근무하고 계시는 시설에서 귀하의 직위는 무엇입니까?

- 1) 최고관리자(원장, 관장, 센터장, 소장 등)
- 2) 상급관리자(사무국장, 부장, 실장 등)
- 3) 중간관리자(과장, 팀장 등)
- 4) 초급관리자(선임, 주임, 대리 등)
- 5) 실무직원(직위가 없는 모든 직원)
- 6) 기타 (적을 것: _____)

43. 근무하고 계시는 시설에서 귀하의 직종은 무엇입니까?

- 1) 사회복지직(생활지도원 포함)
- 2) 일반직, 사무직
- 3) 기능직, 시설관리직
- 4) 보건 의료직
- 5) 기타 (적을 것: _____)

44. 귀하의 주요 업무내용은 무엇입니까? (한 가지만 선택)

- 1)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프로그램 개발 실행, 서비스 대상자 관리 등)
- 2) 운영지원(서무·회계, 시설관리, 운전, 취사, 환경미화 등)
- 3) 관리(시설관리 및 운영, 종사자 관리 및 수퍼비전 등)

- 질문에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참고〉 직종에 따른 경력환산

구분	환산율	인정대상경력
사회복지 시설경력	100%	1.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 2. 2002년 이후 조건부시설로 신고한 시설에서 종사자로 근무한 경력(단, '05.7.31까지의 근무 경력만 인정)
유사경력	80%	1. 물리(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영양사, 조리사 ①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 포함)에서 관련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 ②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등의 법률에 의한 각급 학교에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 ③ 법령에 의해 채용이 의무화된 사업장에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 2. 특수학교교사 자격증 취득 후 특수학급에 근무한 경력 3.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사업관련 부서에 근무한 경력 4.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5. 소정의 자격을 소지하고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콜센터에 근무한 경력 6.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7. 아동·청소년 성교육 전문기관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8. 청소년쉼터·자립지원관·치료재활센터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기 전의 근무경력) 9. 드림스타트 민간전문인력(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10.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11.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12. 기부식품제공사업장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으로 소지하고 근무한 경력 13. 전국자원봉사센터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근무한 경력 14. 사회복지통합서비스전문요원(통합사례관리사)로 통합사례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 15.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상근간사로 근무한 경력 16.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재단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17. 사회복지사 처우향상 법률에 따라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근무한 경력 18. 장애인법에 따라 활동지원기관에서 전담인력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19.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20.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21. 국민기초생활법에 따라 광역자활센터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22.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증을 소지하고 정신보건센터(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군 의무 복무기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를 이행한 다음의 자에 대해 실복무 경력 중 3년까지만 인정함. 단, 해군(해군 상륙병과(해병)는 제외) 또는 공군에서 의무복무를 한 경우에는 3년 6월 기간 내에서 인정함. ☞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포함) ☞ 학군무관후보생과정을 마친 자로서 현역의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 편입된 자 ☞ 의무·법무·군종·수의장교 및 5급 공개채용시험 합격 후 장교로 편입된 자